

인공지능기본법(AI 기본법) 주요내용과 소비자정책의 과제

목 차

1. 서론	/ 01
2.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내용	/ 03
3. 해외 인공지능 법·정책 동향	/ 13
4. 결론 및 시사점	/ 20

김태형 책임연구원 | tae0224@kca.go.kr

김재영 연구위원 | jykim@kca.go.kr

1. 서론

□ **(배경)** 2022년 말 소위 생성형 ‘AI 기술’을 필두로 인공지능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 중임

- Chat GPT, 리걸테크, AI챗봇, AI헬스케어, AI에듀테크에서 인공지능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까지 소비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이용되고 있음

□ **(해외법제)** 해외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EU, 미국, 일본 등은 관련 법제를 마련·운용 중

- EU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¹⁾’, 미국의 ‘국가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²⁾’, ‘미국인공지능진흥법(Advancing American AI Act)’,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³⁾이 대표적임

※ EU의 인공지능법은 규제에 집중하고, 미국과 일본은 진흥 목적이 특징임

□ **(현황)** 우리나라도 2019년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법 제정에 노력을 기울인 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2025.1.21.)되고, 내년 초(2026.1.22.)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기본계획)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지원, 및 ▲(위험예방) 신뢰성 확보와 예방을 위한

1)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

2)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16/amendments?utm_source

3) <https://laws.e-gov.go.jp/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규제가 도입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이처럼 인공지능이 소비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관련된 규정은 소비생활, 소비자 보호 목적에서 구체화가 부족한 실정

○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으나, ‘영향을 받는 자’로 정의

※ 영향을 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함(법 제2조제9호)

- 목적(제1조) : 국민 권익 및 존엄성 보호
- 기본원칙(제3조) : 안전·설명 의무
- 투명성 확보(제31조)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시의무
- 안전성 확보(제32조) : 위험관리체계 구축
- 영향평가(제35조) : 고영향 AI 기본권 영향 평가
- 조사·명령·과태료 규정(제40조·제43조) :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

□ 이에 본고는 법 시행 전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외동향 논의와 소비자 관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제도와 정책 등 시사점을 살펴 보고자 함

2.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내용

1.1 목적 및 정의

- **(목적)**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법 제1조)
- **(인공지능)**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지칭(법 제2조제1호)
 -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적 연산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모방하는 기술을 포함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을 통해 구현됨
 - 법률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은 광범위한 **인공지능기술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특정한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에 한정되지 않음
 - 룰베이스(Rule-Based)⁴⁾,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러닝(Deep Learning), 자연어 처리(NLP), 컴퓨터 비전, 지식 기반 시스템 등 기술을 포함
 - 이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예: 의사결정 트리, 신경망, 강화학습 등)이나 특정 소프트웨어(예: 챗봇, 이미지 생성 AI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인공지능시스템)**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법 제2조제2호)

4) 룰베이스시스템은 IF-THEN 구조의 고정된 규칙 집합에 따라 작동하는 방식으로, 의료 진단 초기 시스템이나 단순 업무 자동화, 정형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초기 챗봇 등에 활용되어, 자동 학습이나 적응 기능은 없지만,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으로 구현하는 형태로 평가될 수 있어 인공지능기본법 상 제2조의 '인공지능' 개념에 포함(김태형·신영수(2023),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활용을 위한 전제와 방향, IT와 법연구 제26집).

-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자율성과 적응성을 갖추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추천·결정 등의 결과를 추론하여 도출하는 시스템
- (판단기준) 인공지능시스템은 ①특정한 목표를 수행 ②자율성 ③적응성 ④추론기능 ⑤인공지능 기반 시스템⁵⁾을 갖추어야 함
- 이 요건들은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에 기초한 것으로, 현행 법제 하에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평가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

5)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동작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단순한 기술 활용(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AI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1.2 추진체계 : AI 기술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 (기본계획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관부처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법 제6조)

〈표 1〉 인공지능 기본계획

구 분	기본계획 수립
목적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
주기·의결기구	3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내용	- 인공지능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윤리의 확산 등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 - 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등

출처: 법 조문을 토대로 재구성(저자 작성)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립과 구성)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표 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구성

구 분	기본계획 수립
목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의 위원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위원장 : 대통령, 부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 -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안보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대통령비서실의 인공지능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출처: 법 조문을 토대로 재구성(저자 작성)

- (인공지능센터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법 제7조)

〈표 3〉 인공지능정책센터

구 분	기본계획 수립
목적	■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과 국제규범 정립·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의 개발 및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에 관한 전문기술의 지원 ■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 및 국민의 일상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분석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사회·문화 변화와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 다른 법령에서 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센터에 위탁한 사업 ■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출처: 법 조문을 토대로 재구성(저자 작성)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설립)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표 4〉 인공지능안전연구소

구 분	기본계획 수립
목적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인공지능안전”이라 함)를 확보
수행사업	■ 인공지능안전 관련 위험 정의 및 분석 ■ 인공지능안전 정책 연구 ■ 인공지능안전 평가 기준·방법 연구 ■ 인공지능안전 기술 및 표준화 연구 ■ 인공지능안전 관련 국제교류·국제협력 ■ 제32조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인공지능안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법조문을 토대로 재구성(저자 작성)

1.3 인공지능기본법상 규제

- (규제대상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여 규제
 - (고영향 인공지능) 고영향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시스템 중에서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이익과 안전,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인공지능(법 제2조제4호)
 - (해당 영역) ‘에너지의 공급’, ‘먹는 물의 생산 공정’,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의 구축·운영’,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등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해당함(법 제2조제4호 가~카목)
 - (생성형 인공지능) 인공지능시스템 중에서도 입력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인공지능(법 제2조제5호)
 - 생성형 인공지능은 글, 소리, 그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산출할 수 있어, 단순한 분석·판단 기능에 중점을 두는 일반적 인공지능시스템과 구별됨
- (인공지능산업)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법 제2조제6호)
 - 인공지능산업의 판단 기준이 반드시 ‘인공지능시스템’(제2호), ‘고영향 인공지능’(제4호), ‘생성형 인공지능’(제5호) 등의 고도화된 개념을 활용하는 것을 요하지 않음

- ‘인공지능’(제1호) 또는 ‘인공지능기술’(제3호)의 일부 요소만을 활용한 경우라도, 인공지능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됨
- 이로 인해 기술 수준과 무관하게 ‘인공지능(AI)’라는 명칭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여, ‘AI워싱’⁶⁾의 발생 가능성을 높임

□ **(규제대상 사업자)** 규제대상 사업자로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인공지능 개발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분류함(법 제2조제7호)

○ **(구분 실의)** 인공지능사업자를 구분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설계 및 구현 주체와 실제 시장에서의 적용 주체를 나누어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민사법상 설명의무 위반, 기망행위, 제조물책임 등의 책임 귀속 판단에 실질적 기준으로 기능

○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법 제2조제7호 가목)

- 인공지능시스템 또는 기술의 설계와 구현의 직접적 책임 주체로, 알고리즘 설계, 자율성 및 적응성 구현, 성능 보증 등 기술적 핵심 요소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

○ **(인공지능이용사업자)**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법 제2조제7호 나목)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주체로서, 광고의 신뢰성, 기술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고지의무, 사용 환경에서의 위험 안내 등 소비자 대응 중심의 법적 의무를 부담함
- 특히 AI제품 광고의 직접적 표출자인 만큼, 표시광고법상 기망행위나 민법상 기만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 등과 관련된 책임 귀속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

6) AI워싱(AI Washing)은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면서 마치 혁신적이고 첨단인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하여 홍보하는 마케팅 행위를 의미함(김태형(2024), 「AI워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소비자정책동향 제140호,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의 의무)**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을 식별,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추가 의무)** ▲위험 관리방안 수립 및 운영, ▲인공지능 결과에 대한 설명 방안 마련,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

1.4 규제 한계

- ‘인공지능시스템’에만 적용되는 규제들은 사업자가 AI 기술구조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음
 -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영향평가 의무(제35조) 등을 규정함
 -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시스템’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시스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법률상 규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예시1) “AI가 자동으로 투자 성향을 분석하고 포트폴리오를 추천한다”라고 홍보한 금융 서비스가 실제로는 룰베이스(사전 조건 분류, IF-THEN 규칙)에 불과한 경우, **자율성과 적응성이 결여**되었음에도 고도화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오도 가능
 - (예시2) 채용 평가(고영향 인공지능의 영역, 법 제2조제5호 사목)에 AI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단순 키워드 추출이나 응답 분석만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사용(‘인공지능시스템’으로 볼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 인공지능사업자는 이를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 (적용제외) ‘국방 또는 국가안보목적으로만 개발·이용되는 인공지능’은 제외됨
- (제재방식) 자율적인 영향평가 제도 및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등
 - (과태료) 법 위반시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규정

3. 해외 인공지능 법·정책 동향

3.1 유럽연합 : 인공지능법(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⁷⁾

□ (현황) EU는 2021년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하 ‘EU 인공지능법’) 초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전면 시행 예정

○ 2024. 5. 21. EU 이사회 최종 승인, 관보게재(효력발생일) 후 단계별 (조문별)로 시행

※ 2024년 6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으로, 발효 6개월 후 금지 대상 AI 규제 시행, 12개월 후 범용 AI 모델, 24개월 후 고위험 AI 시스템의 규제가 예정⁸⁾

○ EU 인공지능법은 잠재적인 위험 및 영향 수준에 따라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제시

□ (인공지능 분류체계 및 규제 대상) EU에서 AI시스템은, ▲금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위험으로 분류, 범용 AI는 별도 규정⁹⁾

○ 금지된 AI시스템은 인간의 자유, 안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EU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으로서 명백히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말함

- 무차별 CCTV 영상 수집 통한 얼굴인식 DB 구축, 잠재 범죄자 예측 시스템 등

7) Regulation(EU) 2024/1689-Artificial Intelligence Act

8) 안성원 외 2인(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SW 중심사회 10월호, 이슈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9) 2025년 2월 6일, EU는 'European Commission, Approval of the content of the draft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defini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established by Regulation (EU) 2024/1689 (AI Act)'(AI법에서 정한 AI시스템의 정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하, 'EU AI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EU의 인공지능법은 'AI시스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AI 시스템' 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시스템(비해당시스템)은 적용 대상이 아님(EU AI가이드라인, 8면, (40) 이하 참조).

- 고위험 AI는 인명·안전·기본권 등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으로, 부속서 III에 따라 특정 분야에 해당하거나, 안전 관련 법률 적용을 받는 경우
 - 자율주행차, 공공서비스 자격판단 시스템 등
 - 의료·교육·교통·인프라 등 핵심 영역에서 사전인증, 위험 관리 시스템, 인간 감독, 품질 테스트, 적합성 평가 등을 요구
 - 고위험 AI에 한해 제품별 EU 지침 또는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통해 CE마크(Conformité Européenne)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부속서 III), 이때 공인기관 식별번호도 함께 기재해야 함
- ※ CE마크란, 제품이 EU 내의 조화된 기술 규격과 관련 법령(Directive/Regulation)에 적합하다는 제조자의 자기 선언 또는 공인기관 인증 표시로 EU 회원국 및 EEA(유럽경제지역)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제품, 기계, 의료기기, 장난감,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등이 대상이며 CE 마크 없이 해당 제품을 EU 내에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 제한적 위험 AI에도 AI 사용 사실 고지나 생성형 콘텐츠 표시와 같은 투명성 의무를 부과함
- 최소위험 AI의 경우 자율적 준수를 권장
- 한편 범용 AI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기술 문서 작성 의무, 훈련데이터 설명, 사고 보고, 사이버 보안 등을 포함한 투명성 규제를 받도록 함
- (위험 관리 및 사이버 보안 의무) 전 생애주기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도록 하며, 위험 분석→완화→모니터링 절차를 요구
- 고위험 및 범용 AI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건을 규정

〈표 5〉 EU 인공지능 분류체계와 주요 의무사항

AI 분류	정의 및 적용예시	주요 의무사항	시행시기
금지된 AI	■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조작, 감정추론,	■ EU 내 배포 및 사용 전면 금지	■ '25. 2월부터 시행 중
고위험 AI	■ 의료, 법집행, 고용, 공공 서비스 등 인프라영역	■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 데이터 편향 점검 ■ 기술문서 및 로그 작성	■ '26. 5
범용 AI	■ 대규모 데이터로 훈련된 다기능 AI(Chat GPT)	■ 시스템적 위험평가 ■ 모델/데이터 설명자료 작성 ■ 리스크 평가	■ '25.12월부터 단계적
최소위험 AI	■ 일반적 소비자 서비스 내 AI(추천시스템)	■ 자율적 준수 권고	■ '25.2월부터 시행중

출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저자 작성)

□ (적용대상) AI개발자, 공급자(수입 및 유통업체 포함), 배포자 모두에게 적용

○ AI 시스템이 운영되는 장소와 AI 시스템이 생성하는 결과물이 EU에서 이용되는 경우, EU 역외의 사업자라 하더라도 EU 시민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규범이 적용¹⁰⁾

※ 고위험군의 경우 AI 구매 후 사용 시 배포자에게도 의무사항 부과

10) 안성원 외 2인(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SW 중심사회 10월호, 이슈,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3.2 미국

□ **(현황)**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포괄적 기본법 대신 부문별 진흥과 규범 정립을 위한 다중 법안 체계를 취하고 있고 더불어 행정명령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음

○ 대표적인 연방법으로, ▲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 of 2020)」이 있으며, 그 외에도 ▲ 「정부 인공지능법(AI in Government Act of 2020)」, ▲ 「인공지능진흥법(Advancing American AI Act)」, ▲ 「인공지능 교육법(AI Training Act)」 등이 있음¹¹⁾

1) 국가인공지능이니셔티브 법

□ 이 법은 미국 AI 이니셔티브 수립을 명문화한 연방법으로 AI 활동의 지원과 관련된 위원회의 설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²⁾

○ 연방차원의 AI 활동을 지원할 국가 AI 이니셔티브실(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Office) 설립

○ 과학기술정책실에 국가 AI 이니셔티브의 실행을 위해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을 조율할 관계부처 간 위원회(국가인공지능자문위원회) 설립 등

2) AI 진흥법

□ 연방차원에서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dvancing American AI Act(이하, 미국 AI 진흥법)’을 발의, 일부 발효 중

11) 오유빈(2024),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국회도서관 2024-1호(통권 제73호).

12) 오유빈(2024),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국회도서관 2024-1호(통권 제73호).

- 연방기관에서 AI기술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AI활용을 강화하며, 리스크 점검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3) AI 행정명령

□ **(행정명령)** 한편 미국은 2023년 10월, 「AI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대통령령」도 발표함

- **(목적)** 이 행정명령은 “가능성과 리스크 양면에서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하여, 민간, 학계 및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사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기, 차별, 편견, 거짓 정보 등 사회적 해악과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사용을 억제하고, AI의 개발과 사용을 안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³⁾
 - 미국 인공지능 정책의 주요 요소는 미국의 AI리더십을 위한 장애물 제거에 중점을 두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¹⁴⁾
- 따라서 ▲기업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테스트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라벨링을 의무화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국가 안보라는 우선순위와 일치하여 개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

※ 한편, FTC 중심의 기만·편향 광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

13) 홍성민(2024), [동향] 미국 AI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대통령령, Law Issue Brief, 한국법제연구원.

14) 이하 미국 행정명령 중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은 김재영(2024), 「미국 AI행정명령 포커스 이슈(4)」 미국 AI 행정명령 제8조: 소비자, 환자, 교통이용자 및 학생의 보호, 이슈브리프,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3.3 일본

- **(AI 촉진법)** 일본은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국가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 of 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일본 AI 촉진법’)을 2025년 5월 제정, 동년 6월 4일 공포됨
 - **(주요내용)**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을 국가 차원에서 촉진, ▲산업계, 학계, 공공 부문 간 협력체계 구축, ▲AI 이용에 따른 위험에 대한 자율적 관리 권장, ▲정부는 기술 기준이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특징)** 일본은 AI 신뢰 확보와 진흥의 균형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진흥 중심이 강한 측면이 있으며,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하는 특징이 있음
- ※ 「AI 윤리 가이드라인」, 「AI 신뢰성 기준」(디지털청) 등

3.4 소결

- (시사점) EU는 명확한 분류체계와 강제력을 기반으로 “통합적 규제 모델”을 택했다면, 미국은 공공중심의 지침과 행정명령, 자율을 보장한 “조화적 규제모델”, 일본은 AI활성화를 위한 “자율적 규제모델”의 특징이 두드러짐

〈표 6〉 EU, 미국, 일본의 인공지능법·정책의 방향

AI 분류	EU	미국	일본
위험기반 분류	■ 단계별 프레임워크로 소비자 보호와 혁신 균형 가능	■ 특정 고위험 AI(의료, 금융, 채용)에 집중하여 선별적으로 관리	■ 특별한 분류체계 없음
포괄성	■ 포괄적 ■ AI 기본법	■ 조화 ■ 부문별·기능별 대응	■ 개별적 ■ AI 진흥 중심, 개별 법률 분산
강제력	■ 법적 구속력 있는 중앙 집행체계	■ 권고적·자율적 ■ 일부 법적 구속력 有	■ 자율권고 중심
정책유연성	■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보호에 방점	■ 산업유연성·혁신 인센티브 보장	■ 개방구조로 매우 유연
규제 실현수단	■ 인증·감독기관·별치 체계 완비(국가 AI위원회, 시장감독기관 등)	■ 연방 부처의 가이드라인 및 보고체계 활용 ■ 주별 법제화와 민간 협력이 중심	■ 내각부·디지털청의 정책 권고 및 민간 자율 실천 유도
투명성 의무	■ 고위험 AI에 엄격한 문서화·설명가능성 요구,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AI에 대한 투명성 의무 부과	■ 연방차원에서는 사용 목적, 작동원리를 설명 ■ 생성형 AI 콘텐츠 라벨링, 정보 공개 의무 등 卍별 도입	■ 원칙 수준의 권고로 구체적 이행 의무는 없음

출처: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라기원, 법제연구원)¹⁵⁾ 및 서술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15) 국회인공지능포럼·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자료집(2025), 「인공지능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중 라기원 자료.

4. 결론 및 시사점

- EU는 위험기반 접근을 통해 고위험 AI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정교하게 마련하고, 미국은 공공부문 중심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정부 권고 중심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구조를 채택
-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각국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추론되고, 궁극적으로 AI 선도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도 엿볼 수 있음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적용·이용되는 만큼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으로 일정부분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기술 진흥에 대다수 초점을 두고 있고, 소비자 안전과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고 보임
- 이에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관련법(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과의 연계점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 투명성 확보

-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의무, 알고리즘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용 목적을 설명할 의무 부과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즉, 소비자가 과정과 출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방통위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2025.3.28. 시행)을 마련하고 있으나,
- AI가 거래 전반에 활용되는 만큼, 전자상거래법 관련 거래의 안전이나 자동추천 알고리즘 편향의 방지 및 소비자 오인 방지 등과 관련된 사항(AI상담추천 고지나 추천알고리즘 고지 등), 표시광고법 및 하위법령에 부당한 AI표시방지나 AI표시 의무를 담보할 만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실질적 이행 담보를 위한 규정도 촘촘히 마련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25년 업무계획을 통해 ‘AI 위생’ 행위 감시 실태조사를 통해 집행 방향을 제시

(2) 소비자안전 확보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실효적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안전 및 기본권 보호가 필요

-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EU, 미국, 일본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CE마크 표시(EU), 영향평가 의무화(미국), 심각한 피해 발생시 사업자 이름 공개 제재(일본)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사용하는 고영향이라는 표현은 중립적 표현(긍정도 부정도 아님)으로 법 적용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입법이라는 지적¹⁶⁾이 있어 논란이 되는 바, 소비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AI

16) 구태언 변호사는 고영향 AI 정의에서 ‘중대한 영향’ 기준이 모호해 어느 수준 영향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 되는지가 불분명하다”며 “EU AI Act(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서 분류하는 ‘고위험’이라는 용어와 결국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도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모두 포함해 해석이 가능한 ‘고영향’이라는 법체계상 낯선 용어를 선택해 법 적용 혼란을 일으킨 것은 부적절한 입법”이라고 비판 우혜승, “인공지능기본법, 고영향 AI기준 모호... 부적절 입법”, 법조신문, 2025.06.25.(<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991>).

규제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필요함

- 또한 소비자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EU의 CE 인증마크와 같은 직관적인 표시도 고려할 필요

(3) 소비자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AI산업은 진흥을 고려하되 영속성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책임성·투명성·안전성 원칙을 체계화·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동 법 시행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관련 교육이 절실히 필요
 - 정부와 기업은 소비자 대상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함
- 한편, 현재 전문가 중심의 구성을 염두해 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에 소비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인공지능 정책과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 소비자법과의 조화로운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 진흥과 더불어 소비자 보호 책임구조의 통합 관점으로 확대가 필요

(4)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장치 마련: AI인증제 등

- 소비자는 실제 AI 기술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AI’라는 표시만을 근거로 제품·서비스 구매 결정을 내리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의 실제 수준과 서비스 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AI기술등급제)** AI기술이 적용된 AI제품·서비스에 대해서는 제3자 기관에 의한 AI기술 검증과 등급 부여를 의무화
 - AI기술의 자율성 수준, 기능 구현 방식, 외부 모듈 및 API 연계 여부, 사용자 개입 정도 등과 함께, AI기술의 종류, 학습데이터의 양과 질, 성능 검증 결과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여 등급을 표시
 - 해당 등급에 따라 ‘AI’명칭의 사용·표시 요건을 설정하거나, 설명의무의 범위와 방식에 차등을 두는 등의 규제설정이 가능함
 - (예시) 평가 항목을 통해 기술 수준을 5단계(T1~T5)로 분류하는 체계로, 예컨대, 룰 기반 단순 자동화는 T1, 대규모 생성형 AI는 T5에 해당하며, 평가 항목에 대해 정량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에 따라 등급을 부여
- **(AI제품·서비스 등급제)** 단순히 AI기술 수준을 넘어서 해당 AI제품·서비스의 실제 사용 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평가함
 - 설명가능성, 소비자 개입권, 성능의 안정성, 업데이트 주기 및 투명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기준, 데이터 처리방침의 명확성, 사전검증 이행 여부, 민감 분야(보건, 금융, 채용 등)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

- 이는 ‘AI기술등급제’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소비자는 기술 수준과 제품·서비스의 신뢰성을 함께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택이 가능함
- (예시1) 고영향 인공지능(의료·금융·교통 등)에 해당하더라도 기술등급 평가 결과 단순한 룰 기반 자동화 시스템(T1)으로 분류된 경우, 위험성과 자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표시의무나 설명의무, 사전검증 의무의 적용 강도는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가능함
- (예시2) 반면, 고기술 등급(T4~T5)에 해당하지만 민감 분야 외에 활용되는 경우, 기술 기반 규제는 강화하되, 제품·서비스등급에 따른 일부 행정절차는 생략·완화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조정이 가능

[참고 목록]

- 김경환(2024). 「EU 인공지능법 시행 동향과 기업의 대응 전략」. 법제처.
- 김재영(2022), 「EU AI 책임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 김재영(2024), 「미국 AI행정명령 포커스 이슈(4) 미국 AI행정명령 제8조: 소비자, 환자, 교통이용자 및 학생의 보호」, 이슈브리프, 한국법제연구원.
- 김태형(2024), 「AI위성: 소비자를 기만하는 인공지능 마케팅」, 소비자정책동향, 한국소비자원.
- 김태형·신영수(2023), 인공지능 기반의 리걸테크 활용을 위한 전제와 방향, IT와 법연구(제26집).
- 안성원 외 2인(202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SW 중심사회 10월호, 이슈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양기분(2020), 미국 FTC의 AI 및 알고리즘 이용 지침 발표와 시사점,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1호(통권 제26호).
- 오유빈(2024),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국회도서관 2024-1호(통권 제73호).
- 홍성민(2024), [동향] 미국 AI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대통령령, Law Issue Brief,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4). 「EU AI Act 해설 보고서」.
- 국회인공지능포럼·국회도서관·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자료집(2025), 「인공지능 기본법의 현황과 과제」.
- 법제처(2024), 인공지능(AI) 관련 국내외 법제동향,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EU법 <https://artificialintelligenceact.eu/>
- 일본법 <https://laws.e-gov.go.jp/>
- 미국법 <https://www.congress.gov/>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